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일	2014. 1. 1
개정일	2024. 4. 1
개정차수	1차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교직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는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4. “외부발명자”는 교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 및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6. “Know-how”는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7. “실시보상”은 본 대학교의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8. “기술이전 관련 비용”은 해당 지식재산권 관련 소요 비용과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실시 보상 등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4조 (권리의 승계) ①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직원 등이 외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24. 4. 1)

③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대학교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 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2 장 신고 및 출원

제 6조 (신고) ① 교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별지 제 1호 서식]

2. 발명 내용 설명서 [별지 제 2호 서식]

② 2인 이상의 발명자 또는 외부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각 발명자의 지분을 정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지분을 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 7조 (승계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조 (권리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양도증[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해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의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외부기관 등에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 9조 (출원) 산학협력단장은 제8조의 양도증을 받은 후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 4. 1)

제10조 (출원의 제한)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출원경비의 부담) ① 산학협력단이 제7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전부 승계하였을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비용은 산학협력단이 전액 지원한다.

② 외부발명자와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출원인에게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외부발명자와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출원 및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방법, 지분비율, 계약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약정 또는 계약에 관한 근거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등록 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계속 보유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매 1년마다 권리의 보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가 지식재산권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식재산권을 양도, 포기 또는 해당 발명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 3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3조 (설치) 지식재산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사항)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 등의 지식재산권 승계에 관한 사항
2. 승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여부에 관한 사항
5.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에 관한 사항
6. 해외지식재산의 출원여부 및 등급심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외지식재산의 출원여부 및 등급심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4 장 실시계약 및 보상

제17조 (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권·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이하 “실시자”라 한다)로부터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발명자의 협조를 받아 실용화 가능성에 관하여 사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발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사업 관련 법령이 기술 등의 실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 (계약체결)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17조의 실시자와 협의하여 실시권 설정 계약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발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시권은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연구비의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통상실시권으로 설정 가능
2. 실시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실시료와 경상실시료(매출액 대비 정률 또는 정액)로 구분
3. 실시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과의 비교결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 가능

③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경영능력, 사업의 범위, 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실

시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주장, 발명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③ 산학협력단장은 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 계약 관련 기술 등에 대하여 실시자가 무단 사용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술보증 및 배상) 산학협력단과 발명자는 실시자와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산학협력단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산학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4. 1)

제 5 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1조 (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 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 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 이전 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상기 1호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2조 (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

②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3조 (사용절차) ①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보상금 지급과 제 2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② 기술료 중 대학지분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 후 기술이전금으로 적립한다.

제 6 장 보상금

- 제24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지급한다.
1. 발명자 본인 : 70%
 2. 산학협력단 운영경비 : 30%
- ② 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외부지원발명 등에 있어서 보상금 배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③ 발명자가 제 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 제25조 (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 공동의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 발명자의 각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②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 제26조 (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 제28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명자의 귀책사유 또는 모인출원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직무의 관장)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서 산학협력단장이 관장한다.

제 7 장 보 칙

- 제30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32조 (비밀의 유지) ①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② 교직원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 하되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연구기밀로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 (기타의 지식재산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기타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 한다.
- 제34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 재	담당	과장	단장

발명 신고서						
발명의 명칭						
발명자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지분(%)	연락처
	교내			(인)		
	"			(인)		
	"			(인)		
	교외			(인)		
	"			(인)		
	계					100
관련연구 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원 희망국						
발명의 개요 (신구성, 진보성 기술)						
담당부서 의견						

주) '발명자'란에는 교내·외를 구분하여 기재하되, 교내 소속인 교직원, 연구원, 강의 및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발명자(외부업체)는 교외로 기재

붙임 : 발명의 내용 설명서 1부

위와 같이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h2 style="margin: 0;">양도증서</h2>										
<p>아래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하며, 향후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유지(연차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 ‘양도 시 약정사항(특기사항)’란에 기재한 내용대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양도인	구분	교내	소속		직위(급)		지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분	교내	소속		직위(급)		지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분	교내	소속		직위(급)		지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분	교내	소속		직위(급)		지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소속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위(급)	단장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내								
양도 시 약정사항 (특기사항)	<p>예시1) 위의 지분 ○○%(합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되, 지식재산의 출원 시에는 (주)○○○(나머지 지분 ○○%를 보유한 외부업체 또는 외부발명자)와 공동출원하여야 하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출원비, 등록비, 유지비(연차등록료) 등 제반 경비는 각자 ○○%씩 부담하여 납부하도록 함</p> <p>예시2) 공동출원에 따른 쌍방간의 계약서 별도 작성 및 첨부(지분비율, 출원비용의 부담, 실시허락, 제3자와의 분쟁, 보상, 계약유효기간 등 표시)</p>									

주) ‘양도인’란에는 교내 소속인 교직원, 연구원, 강의 및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기재(교외 :